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9월 8일, 김기표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6년 9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26. 9. 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부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9.14.)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9.16.)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26. 9.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기표의원)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개정안은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 제정에 따라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법률의 기관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 및 입법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검사징계법」 제5조의 징계위원회 위원 임기조항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특이사항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의겸위원)

원안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의결

※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검찰청법」 제43조”를 “「공소청법」 제51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해임(解任)”을 “파면(罷免), 해임(解任)”으로 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간사는 법무부의 검사 인사·조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의4제1항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임”을 “파면, 해임”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해임”을 “파면, 해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징계의 집행은 건책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이나 각급 공소청의 검찰총장·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이 하고, 파면·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의 징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 행위의 징계에 관하여는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2. 3. (생 략)	제2조(징계 사유) ----- ----- -----. 1. 「공소청법」 제51조----- ----- 2. 3. (현행과 같음)
제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u>해임(解任)</u> , <u>면직(免職)</u> , <u>정직(停職)</u> , <u>감봉(減俸)</u> 및 <u>견책(譴責)</u> 으로 구분한다. ② ~ ⑤ (생 략)	제3조(징계의 종류) ① ----- <u>파면(罷免)</u> , <u>해임(解任)</u>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 ③ (생 략) ④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 ⑥ (생 략)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 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원은 임기가 끝났 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 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생 략)	제6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현 행과 같음)

② 간사는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이 되고, 서기는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생략)

제7조의4(퇴직 희망 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대검찰청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청구자(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는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분송달과 직무정지) ①·② (생략)

③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② 간사는 법무부의 검사 인사·조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과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4(퇴직 희망 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

----- 공소청-----.

② ----- 파면, 해임-----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분송달과 직무정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파면, 해임-----

대하여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직무 집행이 정지된 검사에 대하여,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다른 검찰청이나 법무행정조사·연구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3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의
집행은 건책의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검찰총장·고등검찰
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
장이 하고, 해임·면직·정직·

<u>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u>	<u>면직 · 정직 · 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 이 한다.</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